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 정

사 건 18진정0845100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 권침해

진 정 인 권〇〇

피 해 자 권○○ 등 76명

피진정인 ○○○도○○○사업소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현재 ○○○도○○○○사업소에서 출퇴근 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문인식기 운영과 관련하여 즉시 지문인식기 운영을 중단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당사자 동의 확인 절차, 대체수단 마련,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도○○○○사업소장은 2018. 9. 1.부터 복무관리가 편리하다는 이유

로 소속 도로보수원들에게 출퇴근 시 지문인식을 강요하고 있으며, 지문등록을 통한 출퇴근 관리를 시행하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의신체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 1) 도로보수원은 지방도를 수시로 순회하면서 도로 및 시설물을 감시· 보호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당초 도로보수원의 복무관리 방법 은 「출퇴근 기록부」서명으로 확인하였으나, 지각 및 기타 사유로 대리 서 명, 근무지 이탈 등 문제점이 종종 발생하여 왔다.
- 2) 도로보수원은 「○○○도 도로보수원 복무지침」 제4조(근무시간)의 제1항에 따라 ○○○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준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도○○○○사업소 종합감사(2018. 1. 29 ~ 2. 12) 당시 도로보수원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준수를 위한 복무관리체계의 객관성 및 신뢰성 보완을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하였다.
- 3) 피진정인은 출퇴근 지문인식시스템 도입·시행 당시 관련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큰 문제의식 없이 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지문 인식을 통한 출 퇴근 기록이 직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고, 제공 된 지문의 특징데이터 정보 가치를 개인정보로 인정하는 범주에서 「개인

정보 보호법」상으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간과한 측면이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 진정서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답변서, 전화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에서는 도로보수원의 출퇴근 관리를 수기로 해오다가 2018. 1. 29 ○○○도○○사업소 종합감사에서 도로보수원 복무관리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2018. 9. 1.부터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나. ○○○도○○사업소 도로보수원 복무 관리를 위해 지문인식기(유니온 커뮤니티 제품) 35개를 설치하였고, 개인의 지문정보는 지문인식기 내에 삽 입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다. 2019. 1. 30. 현재 도로보수원은 77명이며, 지문인식 시스템에 지문 등록한 인원은 77명이다.

라. 2018년 9월 지문 등록 당시 및 2019. 1. 30. 현재까지 직원들의 동의 절차는 밟지 않고, 지문을 등록하였다.

4. 판단

가. 관련 법령

1)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헌법」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비밀정보에 한하지 않고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또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 짓는 것으로써,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 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때,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전속적인 것 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 정보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의 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2) 특히, 고도로 발달된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생명주기에 따라 수집과정에서 명확한 인식과 설명 없는 수집의 위험성, 저장관리과정에서 해킹에 의한 유출,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와의 결합에 따른 오·남용으로 위험성이 존재하고, 최근 금융기관의개인정보 다량 유출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 3)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수집할 수 있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수집하는 경우에도 수집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목적에 맞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경우 등외에는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 4) 이 진정사건에서 피진정인의 지문인식기 운영의 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면,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소속 직원의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는 기관운영의 문제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진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사건의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직원 출퇴근 관리는 지문이라는 개인의 생체 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5) 지문은 개인의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정보에 해당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헌법」제37조에 의거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재 2005. 5. 26., 99헌마513)은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있고, 현행 법률에서 개인의 지문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률은 「주민등록법」등 몇 개의 법률밖에 없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위에서 제시한 「○○○도 도로보수원 복무지침」 제4조(근무시간) 규정은 지문인식기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은 위 지침이 아닌 현재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련한 법적 근거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이 법 규정에 부합하게 수집하고, 운용방식 및 관리 통제 수준 등 관리적·기 술적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지문정보 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속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 6) 또한, 소속 도로보수원들의 동의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출퇴근 관리를 지문인식기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이를 이용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퇴근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지문 등록을 강제로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때의 지문수집에 따른 동의는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7)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이 소속 도로보수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문 정보를 수집하여 2018. 9. 1.부터 지문인식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관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위원장 정문자

위 원 한수웅

위 원 김기중

_	8	_
---	---	---